

갈현2동 주민자치회 회의록

회의명	2024년 1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일시	2024. 1. 9.(화) 19:00				
장소	갈현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참석대상 (참석인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총 37명)				
회의구분	정기회의	임원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	민관협력회의
	○				
	<p>◇ 회의 전 갈현2동 전입 직원 소개, 치안 안전사항 보고(연신내 지구대 김정근 경감)</p>				
	<h2>■ 운영보고</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12월 수강료 징수·집행 현황 및 북카페 운영 수입·지출 현황- 주민자치회 사업 집행 현황 보고(지명희 간사 진행)-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보고(민경애 사무국장 진행)				
	<h2>■ 보고사항</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12월 정기회의 및 2023. 성과공유회 워크숍<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2.(화) 정기회의 및 '23. 활동성과 공유 주민자치 유공 표창과 우수활동 위원 대상 시상 진행○ 꿈꾸는 미래 학교 장학금 전달<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마루 북카페 수익금으로 선일여자중학교, 대성중학교에 장학금(동아리 활동 지원금) 지급(각 100만원)- 관내 구립 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및 광현 지역 아동 센터에 장학금 전달(각 50만원)○ 2023. 하반기 내부감사				
회의내용	<p>제16조 ④항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 12. 28.(금) 17:00- 결과 : 사업부문 및 회계부문 등의 시행이 운영세칙에 부합하며 적정함				

○ 2023. 주민자치회 보조금 정산 ※ 2024. 1. 5.(금) 정산자료 제출 완료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비>

동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B/A, %)	집행잔액 (C=A-B)	반납이자	비고
갈현 2동	총계	5,000,000	5,000,000	100%	0	5,190
	경상보조	5,000,000	5,000,000	100%	0	5,190
	자본보조	0	0	0	0	-

※ 운영비 집행 이자 5,190원 발생, 반납예정

<주민자치활동지원(의제개발 및 주민총회)>

동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B/A, %)	집행잔액 (C=A-B)	반납이자	비고
갈현 2동	총계	15,000,000	15,000,000	100%	0	7,643
	경상보조	15,000,000	15,000,000	100%	0	7,643
	자본보조	0	0	0	0	-

※ 의제개발 및 주민총회 집행 이자 7,643원 발생, 반납예정

<주민자치활동지원(마을문화축제)>

동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B/A, %)	집행잔액 (C=A-B)	반납이자	비고
갈현 2동	총계	18,000,000	18,000,000	100%	0	1,441
	경상보조	18,000,000	18,000,000	100%	0	1,441
	자본보조	0	0	0	0	-

※ 마을문화축제 집행 이자 1,441원 발생, 반납예정

○ 2024. 갈현2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 및 마을활동 지원을 위한 -
2024. 갈현2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지역 주민들의 마을 활동 참여를 위한 우리 동 자치회관의 내실 있는 자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4

II. 추진방향

□ 주민자치교육 및 자치사업 활동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지역자원의 연계와 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 중심 자치회관 운영

III. 자치회관 연혁

□ 시설현황

구 분	갈마루 복카페	다목적실	소강화실	호경글작은도서관	컴퓨터교실
위 치	2층	3층	4층		
면적	33㎡	154.87㎡	17.71㎡	63.44㎡	40.25㎡
기능	주민총회장 봉사자연무장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회원 모임	도서열람 및 대출·반납	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자 모임	인터넷·인터넷 게임

□ 프로그램 및 동아리 현황

구 분	계	시민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9	컴퓨터 기초 경쟁력 기초(시니어모바일)	수재회복무기, 노인나이브아트, 생활요가 문화예술
동아리	5	컴퓨터교실(중급)	스포츠댄스, 워크숍 마술체험기기 체험

IV. 자치회관 운영관리

□ 프로그램 강화 운영계획(2024. 1분기)

구 분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명)	수강료(3회)	장소
시민교육	컴퓨터 기초	월 수	09:30~11:00	15	45,000원	4층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 활동	월 수	11:00~12:30	15	45,000원	3층 소강화실
문화여가	생활요가 A	월, 수	16:00~17:30	15	30,000원	3층 소강화실
	수재 회복무기	월, 수	16:00~17:30	25	45,000원	4층 컴퓨터교실
	보태니컬 아트	월 수	09:30~11:00	16	45,000원	4층 컴퓨터교실
	시니어 모델 A	월 수	09:30~12:00	16	45,000원	4층 컴퓨터교실
시니어 모델 B	화	13:30~14:30	15	30,000원	4층 컴퓨터교실	
		14:30~15:30	15	30,000원		

○ 운영기준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
- 운영인력 : 주민자치회 하족에 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대로 운영
- 운영규정 : (제작시간 1시간, 운영시간 8시간)
- 운영비용 : 운영수익으로 충당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내 학교로 지원

○ 운영기준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
- 운영인력 : 주민자치회 하족에 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대로 운영
- 운영규정 : (제작시간 1시간, 운영시간 8시간)
- 운영비용 : 운영수익으로 충당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내 학교로 지원

V. 행정사항

□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 : 프로그램 안내, 각종 행사 및 홍보사항 게시

□ 자치회관 운영계좌보고서 제출 : 면2회(반기마다 제출)

□ 수강료 정수 및 출석내역 공개 : 면2회(반기마다 제출)

■ 안전사항

○ 쥬빌리 오케스트라 연 1일 봉사위원 날짜 선정의 건

- 쥬빌리 오케스트라(매주 토요일) 10:30~12:30 합주연습 시 단원 출석관리 및 보조 활동, 합주 연습 사진 촬영 후 단톡방 공지, 뒷정리 등을 위한 활동

- 의결사항 : 원안에 대한 31명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결함

※ 가나다순으로 봉사 날짜를 정하여 일정표 작성·단톡방 공유,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올 시 다른 위원님과 시간 조율 가능

■ 기타사항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선거법 안내

□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사항

○ 상시개관

- 선거운동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상관)

- 7. 토리반의 장 및 음·연·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음·연·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음·연·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 「지방자치법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면·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제60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등)이 적용됨 (중앙선관위, 19.6.24)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예비후자거나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

- 선거관련 규칙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소속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2. 지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회에 참여하거나 그 기회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4. 삭제 <2010. 1. 25.>
- 5. 선거기간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금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항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 선거기간동안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 선거기간동안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90일 계획* 24. 1. 11.(목)

- 선거사무처·선거위원회사무처 등 계획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풍·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0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업무원, 대달보조자 또는 투표장관인이나 사전투표장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운동에서는 그 실시의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관제개선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업무원, 대달보조자, 투표장관인이나 사전투표장관인 등이 되고자 할 때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운동에서는 그 실시의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관제개선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업무원, 대달보조자, 투표장관인이나 사전투표장관인 등이 되고자 할 때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운동에서는 그 실시의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회의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예상되는 회의는 예외로 한다.

※ 회의의 시작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을 준용해 소속 주민자치회에 사직원이 절수된 때를 그 시기로 본다.

※ 공천법 제60조 2항을 적용해 회의의 근거로 해석하는 어려움

※ 위원회 아닌 본과위원회, 선거사무관제개선사무처가 되는 경우 회의의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선거사무관제개선사무처를 활동하는 동안은 본과위원회 활동을 자제

□ 주민자치회의 활동 제한

○ 선거기간 중 계획* 24. 3. 26.(목) ~ 4. 10.(수)

- 주민자치회 회의 등 규칙 : 각종 회의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줄여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른생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행정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60일 계획* 24. 3. 26.(토)

- 행사 개최 및 후원 규칙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교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집집·특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전자·지면·기타 재화의 구매·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자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행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족 내지 친족에 중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풍·리·반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회의사진

